

SUSTAINABILITY ISSUE REPORT

2011. 3. 9. (제1호)

대·중소 동반성장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역할

목 차

I. 연구배경과 목적

II.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경영과의 관계성

III.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지속가능경영 내 통합과 실천

IV. 정책 시사점

작성: 김익성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I. 연구배경과 목적

대·중소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자 지향점이기도 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산업별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공정한 경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통합 추구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간 성과 및 경쟁력 격차는 산업 협력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를 축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사회 양극화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2010년 12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 중심의 정책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상호보완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정거래와 동반성장문화를 우리 경제사회내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부의 조직 인프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조직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 동반성장 시책이 산업계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중소기업의 경영 사고와 관습이 그리고 조직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론은 결국 기업 스스로가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속가능경영체계내 통합시켜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동반성장은 결국 협력기업 간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전제적 방법론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 강요된 정책적 규제로 기업들에게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시각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적인 관리도구인 지속가능경영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동반성장이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경영체계 하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기능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경영과의 관계성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의미와 필요성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는바,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사전방지하고 기업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과정과 행동을 의미한다.¹⁾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제 대기업들도 자기의 생존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기업의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로 인한 단가인하압력은 대·중소기업간 생산협력과 공정한 분배체계를 깨뜨림으로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반면 공정하고 질서 있는 기업생태계²⁾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며, 다양한 형태(기술개발, 품질 및 기능개선, 마케팅 등)로 진화발전되면서 협력기업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더욱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게 한다. 결국 동반성장은 경제의 성장동력원으로 경제사회의 부국선진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동반성장이란 대기업이 기술과 경영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상호간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원 배분의 적정화
- 대·중소기업 간 사업, 기술 마케팅 등 활동 영역의 배타성과 상호보완협력
- 거래질서의 공정화
- 거래의 지속화와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원활화와 신뢰구축

이러한 동반성장 요인들은 소통시간과 관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며³⁾ 나아가서는 협력기업들의 경쟁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속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창조적인 기업생태계는 열린 혁신시스템(Open Innovation System)으로서

1) <http://www.winwin.go.kr/intro/Purpose.do> 동반성장cyber종합지원센터
 2) 기업생태계란 기업환경의 테두리 내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강력한 共進化(co-evolution)를 꾀하는 경제적 공동체이다. M. Iansiti, The Ecology of Strategy, 2004
 3) 미국에 비해 완성차 시장의 경쟁이 심한 일본 자동차업계는 부품업체와의 밀접한 의사소통 덕분에 신차개발에 소요되는 총 엔지니어링 시간이 미국의 1/3에 불과함. (前 Harvard Business School 학장, K.Clark) 관련 참고문: K.J.Arow, 1974, J.P. MacDuffie/ S.Helper, 2005; O.Williamson, 1985

외부로부터의 가치있는 아이디어 즉 새로운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형성된다.⁴⁾ 융합경영시대에 있어서 기업간 경쟁은 결국 기업이 소속된 생태계간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은 창조적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한 예로 독일의 폭스바겐은 노사 및 볼프스부르크 지자체와 공동출자로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AutoVision'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내 부품단지와 혁신캠퍼스 조성을 통해 창업활동과 기술이전을 실천하였고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생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다. 지역실업률은 97년 17.2%에서 2003년 8.4%로 감소하였고 6년간 100여개 기업유치, 200여개 기업이 창업하여 지역 내 23,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폭스바겐과 볼프스부르크시는 협력개념을 1차협력업체, 2차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주민 등으로 확장시켜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수익을 생태계육성에 재투자하는 성장모델을 설정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전한 혁신 생태계의 출현은 결국 폭스바겐과 그 협력기업간의 혁신의 이익을 공유하고 글로벌 지속성장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⁵⁾

애플의 앱스토어도 2003년 아이팟, 아이튠즈 모델을 통해 온라인 음악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2008년 아이폰, 앱스토어 모델로 하드웨어, SW, 콘텐츠, 음악, 영상, 교육, 게임, 앱, 서적 등 온갖 제품의 글로벌 유통을 촉진하는 IT 산업 생태계모델로 진화발전되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공급 사업자들에게 매출액의 70%를 배분하여 자기 기업은 물론이고 협력기업들의 수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 정책전환

대·중소기업 상생은 현재 겪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감소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현재의 갈등을 유발한 임금⁶⁾, 기술 등의

4) I.Nonaka, 지식창조기업이론, 1995;H. W. Chesbrough, "The Era of Open Innova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4, no. 3 (spring 2003): 35-41

5) 정동일(2010) 대·중소기업의 선진 상생노사관계 구축 방안 모색, 발표자료

6)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은 1,000인 이상 기업체의 시간당 임금을 1로 보았을 때, 300-999인은 0.86, 10-29인은 0.61, 1-9인은 0.51로 큰 격차를 보임.

격차는 대·중소기업 협상력 격차와 수익구조의 양극화 현상을⁷⁾ 가져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 표2 >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65.0	62.8	65.8	58.5	55.0	54.5	43.9	42.9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백서, 2008, p. 441

따라서 미래지향적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상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과 격차를 줄이고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곧 동반성장이다.

상생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기업의 부담(-)과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의 상계로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제로섬 결과가 된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점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요약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현재 존재하는 파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방식에는 갈등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호간 파이를 키우는 동반성장이 요구된다. 또한 납품가격과 품질 등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욕구와 교섭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위적인 조정이나 간섭에 의해 변화시키는

< 표1 > 기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단위: 만원, 시간)

	1~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 이상
월평균 임금	124.8	146.5	159.1	171.3	198.0	226.3
월근로 시간	232.8	227.2	227.8	227.6	221.2	215.5
시간당 임금	0.553	0.665	0.728	0.789	0.940	1.089
임금 수준 비교	0.51	0.61	0.67	0.72	0.86	1.00
표본크기	4,028	3,130	3,167	1,956	1,616	3,769

주: 모든 임금수준은 각년도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수준임. 자료: 조동훈, 2009,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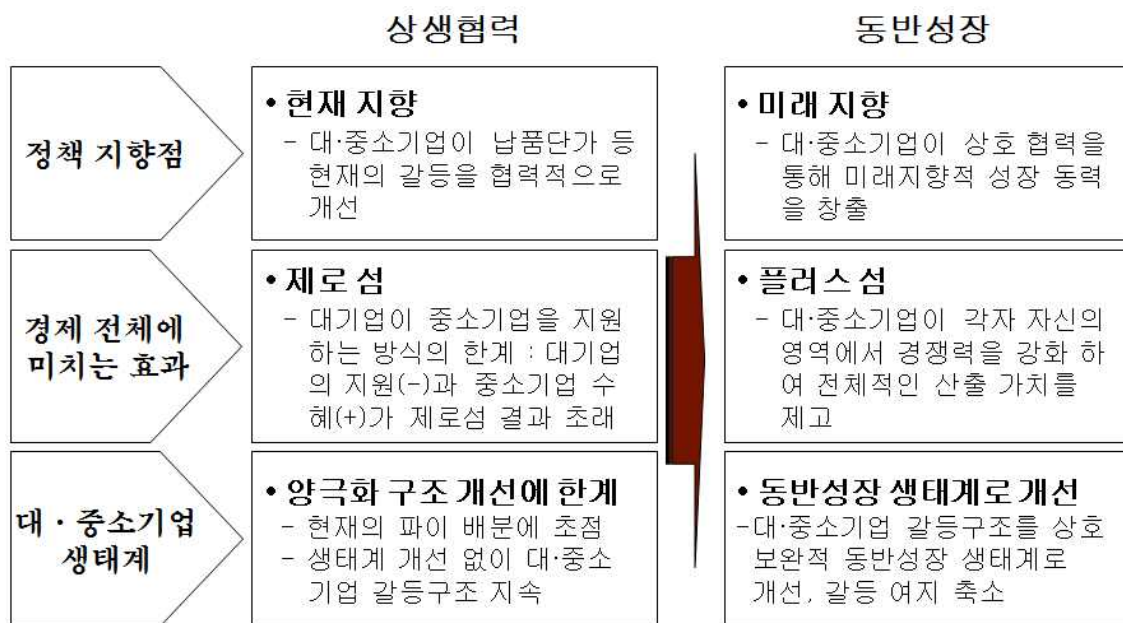
7) <표 3>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1	-0.7	-2.9	1	0.3	-0.6	5.4	6	10.2	8.1	7	8	3.8	7.1
중소기업	1	0.4	0.6	2.9	3.3	2.2	3.4	2.5	3.3	3.9	3.5	3.6	2.3	4.2

2002년 이후 대기업 5~10%, 중소기업 2~3% 수준으로 평균 3~7%의 격차가 지속. 이는 중소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에도 기인,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해당 년도)

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크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로 존재하면 교섭력 격차와 불공정의 문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가능한 한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도록 해서 서로 협력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동반성장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림 1 >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 정책전환



출처 : 김승일 (2010), 동반성장이행현장, P. 22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경과

정부는 2004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등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그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보고대회」를 6차례('05-'07년)에 걸쳐 개최하여 왔다. 또한 상생협력 관련 법령 제정, 추진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6.3)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08년 이후 범부처적인 「상생협력추진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적 지원으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2004.12.) 하였고, 상생협력연구회,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상생협력대상' 시상 등을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바 있다.

2010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마련되었고 동년 12월 동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대기업 등이 참여하여 상생협력에 관한 각종 ‘협약식’ (‘08-‘10년)도 체결되었다. 특히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3년 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표4 참조).

< 표 4 >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 부처

추진분야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관련부처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기술협력 부문	① 상생형 공동 R&D 확대	산자부, 중기청
		② 환경·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산자부
		③ 신뢰성·품질혁신 지원	산자부, 중기청
		④ IT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	산자부
		⑤ 대기업의 특허기술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	산자부, 특허청
	자금·금융 지원 부문	①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추진	산자부, 재경부, 과기부
		② 생산·운영자금 지원형 네트워크론 활성화	중기청, 재경부
		③ R&D 사업화 자금 지원	산자부, 중기청
	인력개발 부문	① 대기업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노동부, 중기청, 산자부
		② 대기업의 전문직업훈련기관 및 전문교육과정 개방 확대	노동부
		③ 상생경영 최고경영자과정, 상생경영학교 운영 내실화	산자부
		④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및 근무여건 개선	노동부
		⑤ 대기업 건강인프라 공유 추진	노동부
	성과공유제 정착·확산	① 민간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고도화	산자부
		② 공기업에 대한 성과공유제 확산	산자부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① 부품·소재	산자부, 정통부
②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자부	
③ 자동차		산자부	
④ 조선		산자부	
⑤ 석유화학-플라스틱		산자부	
⑥ 유통		산자부	
⑦ 정보통신		정통부	
⑧ 지식-서비스업		산자부	
⑨ 건설		건교부	
공정거래 문화 정착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① 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공정위, 산자부, 건교부
		②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확대 및 실효성 확보	중기청
	자율적 공정거래 인프라 확충	①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중기청, 산자부
		②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도 확산 유도	중기청
		③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 정착 유도	공정위
④ 부처간 「공정거래 협력네트워크」 운영 내실화	공정위, 중기청, 산자부		
⑤ 공공부문 「중소기업 공사발주제도」 확산	산자부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모델 확산	① 1차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	중기청
		② 중소기업간 협업 파트너십 강화	중기청, 산자부, 정통부
	글로벌시장 지향형 상생협력 촉진	①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② 대·중소기업 공동 마케팅 활성화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③ 대·중소기업 해외 건설·플랜트 공동수주 지원	건교부, 산자부
	지역발전 기여형 상생협력 활성화	① 대기업(대기업-협력업체)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산자부
		② 대기업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선도역할 제고	산자부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	① 상생협력 주간 제정	산자부	
	② 상생협력 추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③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활성화	산자부, 정통부	

정부의 그간의 상생정책 추진은 정부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를 추구한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 임금 격차 등이 지속되고,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상존하는 등 한계도 노정하였다.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속가능경영의 상호 관계성

사회책임경영(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과 노조,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해당기업간의 이익이 상호조정과 합의에 기초하여 기업가치를 높여감으로써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고도의 전략적 기업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⁸⁾ 사회적 책임경영이 수반되지 못하는 동반성장이란 결코 지속성이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중소기업상생의 문제는 산업 및 기업차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앞에서 언급된 노조, 지역사회 정부, 은행 고객, 환경단체 등과 필수불가결한 연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상생기조나 그에 기반한 공생적 기업생태계는 협력공동체, 즉, 대·중소기업간 혁신능력을 제고시키면서 스스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를테면 기업은 환경이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환경이라는 지구적 대의(大義)를 사업 기회와 연결시킨 GE의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환경친화적 상상력)' 비전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2010년 공표된 ISO 26000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공정한 마케팅 및 정보공개,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노동인권의 보호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경영관리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 표준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 상품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기업,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본원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치열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기업 등은 ISO 26000의 준수가 필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ISO 26000은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들이 이자율 결정, 그리고 기업투자와 평가 시 고려할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조달기준, 세금감면기준, 우선구매기준 등에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조짐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ISO 26000은 이는 새로운 기업관리시스템과 방식을 시도해야 하는 변화와 혁신

8) 김익성(2008), No CSR no Future

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도약의 촉진 계기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논의되고 있는 동반성장도 ISO 26000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체계 내에서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⁹⁾

따라서 사회적 목적을 기업의 이윤 동기와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은 결코 지속가능경영과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는 지속가능경영 성과평가체계의 하부평가체계로 통합화 되어야 한다.

III.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지속가능경영 내 통합과 실천

1.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지속가능경영 성과평가체계 내 통합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의 일부로 지속가능경영 평가체계의 하부 성과평가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우선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단행하여야 한다. 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상생협력관계의 강도와 이의 성과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중소협력기업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추후 거래의 단절을 염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라 단편적인 현장조사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적기관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 대기업이나 대규모 소매업체의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 관행을 유인하는 강력한 조치가 요망된다. 직권 조사 시에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대동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명정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협력 및 입점중소업체의 정보비밀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9) KCoBEX SMTM 지표(협력업체) 참조

2. 동반성장 협력 관계 및 성과평가체계의 정립

대기업 대규모소매업체와 협력 및 입점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와 상생협력성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성과평가지수를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는 동반상생협력관계를 알아보는 협력관계 지수와 상생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성과지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 협력관계 및 성과지수는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총 11가지 요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

- 협력관계지수 : 비전/목적시스템, 전략, 조직화, 의사결정시스템, 관리프로그램, 성과평가지시스템의 6개
- 성과지수 : 공정거래협약, 혁신성과, 매출증가, 시장확산 및 점유율, 기업 명성과 브랜드 인지도의 5개

해당 협력관계 및 성과평가 분류체계는 BSC기법을 응용하여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들의 개별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직관 등을 활용한 직관제시법이나 또는 AHP 기법 또는 회귀분석결과 β 값을 고려하여 응용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상의 언급된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는 지속가능경영 성과평가체계의 하부적 지표체계로서 환경성과평가지표체계처럼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 지표는 향후 정밀한 세부지표의 대상을 지표정의서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측정방법과 평가측정치의 판단기준과 범위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속가능경영지표 중 협력업체분야는 다수가 상생을 표방하고 있는바, 이는 동반성장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공표 시에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원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표체계 내 지표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를 밝히고 동시에 명망있는 검증기관(인)을 통해 그 정보의 완전성과 충분성, 명확성, 적시성 그리고 신뢰성과 투명성, 계속성과 비교가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5> 동반성장 협력성과평가체계

평가지수	평가분야	가중치	
I. 동반성장 협력 관계 지수	1. 동반성장철학, 비전 및 목적체계 ● 철학: 동반성장 헌장 ● 비전/목적	5	60
	2. 동반성장 협력 전략 ● 동반성장 전사적 지원전략 ● 기능별(구매(원자재)/생산/R&D/마케팅/인사/자금/AS 등 분야별)	10	
	3. 동반성장 조직화 ● 지원예산 ● 조직 및 인원 ● 정보수급	10	
	4. 동반성장 의사결정 대상과 프로세스 ● 프로세스별 의사결정 주체, 협의 대상(단가>원자재 연동 등, 기술보호/정보유출 등), 범주 ● 거래 협의대상과 대상별 조정 합의, 처리기준 및 절차 ● 합의된 보상 및 제재	5	
	5. 동반성장관리프로그램 ● 관리매뉴얼/지침 ● 교육/세미나	10	
	6. 동반성장 성과시스템 ● 동반성장성과평가체계 ● 성과공유배분체계 ● 동반성장 공표: 보고서, 온라인 등	20	
II.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성과지수	7. 공정거래협약 실행 ● 발주 및 계약체계비교(표준계약 준수) ● 불공정사례 (대상 범주조사 합의 전제) ● 공정처리결과	10	40
	8. 혁신성과 ● 기술개발: 설계/구조/품질/기능 개선 ● 관리개선(생산공정 등 경영관리시스템) ● 원가개선: 시간/비용개선 ● 마케팅(이벤트)/판로확대 ● 특허	10	
	9. 매출증가(해당 제품)	10	
	10. 시장확산 & 시장점유율	5	
	11. 명성/브랜드인지도	5	
	합계		

3. 동반성장 협력성과평가체계의 활용 및 효과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공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협력거래의 관행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법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표가 실제 의무화 수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의 계약체결 시 또는 지원기관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는 방안 그리고 세제혜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투자 및 금융기관에서도 이들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기업들에게 대출 및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면 굳이 정부가 나서 입법화하여 공시 의무화하여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공표와 활용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선순환구조로 병행되어야 한다.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지수의 산정과 평가 그리고 결과의 공표는 결국 대·중소기업간의 현실적인 상황과 법적 근거에 따른 공시의무화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의성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그 실효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를 활용하는 대기업 및 대규모소매업체 그리고 협력 및 입점중소업체들의 경우, 대기업은 물론이고 협력중소업체들에게 투명하고 공유된 비전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협력 및 성과의 공정하고 진실한 실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역량체계를 갖추으로써 대·중소기업 상호간은 물론이고 관련 이해관계자 그리고 중소협력기업들에게 공익적 신뢰(Trust)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는 관련 대기업 측면에서도 중소협력기업의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절감과 제품품질 및 기능개선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협력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며 이는 결국 대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이는 개별 협력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동반성장의 동기부여적 유인도구란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정책적 관리도구이다.

또한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결과를 지속가능보고서에 담아 공표할 경우 이는 유통시장 내 고객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를 높여 기업의 명성(브랜드 인지도)과 가치(주가)를 높임으로써 대기업은 물론이고 협력 및 입점중소기업들의 매출확대, 자금도입과 인재확보 등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제시는 향후 협력방향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기업에 협력하고 있는 1차 및 2차 협력기업의 전략적 협력네트워크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련 지수의 실질적인 경영내 실천반영은 상호간 정보공유와 기술개발 그리고 경영혁신으로 파급 확산됨으로써 상호간 기술력 증진과 다양한 경영노하우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협력기업간의 활용과 실천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선진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중대한 전제적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정립과 공표는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지원 및 감독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지원과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지원의 경제적 성과를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결정을 할 때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 내 협력평가 결과가 낮은 지표부문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내용과 규모 등 정책의사결정의 정보소스로서 그리고 개선보완의 조정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질서의 유도를 위한 규제법규의 제정이나 행정지도를 위한 기준마련을 위한 정보자료로써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업 간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실천은 감독 당국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IV. 정책시사점

1.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성장가능 원리의 정립

우선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기업경영 목적과 조직내 관리영역에 적극적으로 통합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하도급 거래, 대-중소기업 관계에 관련된 법령, 중소기업과의 거래 윤리 등을 준수하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즉 지속가능경영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등을 통해 명확히 이해시킴으로써 동반성장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실천과제일 뿐만 아니라 협력중소기업도 동등하게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력 중소기업도 지속성장가능체제의 인식과 정립을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지속성장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상의 변화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근간으로 협력계약의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보완적 윈윈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건전한 상생협력 산업생태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소기업도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파트너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협력기업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품질/기능, 원가, 납기 역량을 보유하여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래모기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운동기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협력중소기업들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기업생존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양극화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계층간의 불화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우리경제와 사회의 발전적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협력중소기업의 총생산단가 중 협력중소기업들의 총납품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초과 달성된 이익을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상의하여 기술개발, 고용안정 교육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운동기금을 적립예치하여 이익에 기여한 협력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⁰⁾

혁신운동기금의 활용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 모기업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및 개선
- 수입대체부품 소재의 공동 국산화 연구개발
- 해외동반진출용 제품(해당국가의 문화와 관습에 맞는 디자인 개발 등)
- 납기 단축을 위한 제품설계, 공법 및 공정 개발
- 친환경 공동 기술 연구개발

10) 초과이익 중 개별 협력업체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익공유의 적용 여부나 규모 그리고 대상기업 등도 대기업과 해당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들의 원가산정능력과 관리수준은 합당한 기여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기술 교육 및 지식경영세미나
- 기타 경영혁신활동
- 해외 협력성공사례 연구
- 대·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초기 비용
- 협력기업 긴급유동자금 대출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기금의 활용은 우선 신청된 제안 용도의 자체평가 → 전문가 검증 → 기금 활용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기금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건의 유형결정, 기여도 확정, 기금활용 시 적용 기간과 액수 평가, 기금운영 만족도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운동기금의 운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사업 시 우대하거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반시장적인 요소도 크게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인센티브는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시장 내 고객의 심리적 지원을 통해 매출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혁신운동기금은 기술개발투자나 교육, 정보지원 등 다양하게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재투자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모기업인 대기업의 상품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운동기금은 지속적인 개념 하에서 선순환 성장구조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속성장가능성을 지향하는 자율적 제도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동반성장의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 지식수급플랫폼 개설 및 운용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통해 협력 목적과 해당 기업 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접목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동반성장 지식수급플랫폼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동반성장기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의 보편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러한 동반성장예 대한 협력기조에 중요한 상승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진 고학력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명예퇴직 등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취업시장에 내몰린 직장

경력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전문지식, 경험 등을 살린 창업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50대 이후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경영 및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니어층이 증대되고 있는바, 이들의 새로운 창업발상 중 협력아이디어로 실제 응용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들 아이디어는 사장되지 않고 동반성장 지식수급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통해 매매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창업아이디어 제공자가 해당 대기업이나 협력기업들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또는 창업을 통해 이들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동반성장 지식수급플랫폼 개설 및 운용지원은 이런 점에서 동반성장의 협력성과제고, 일자리 창출 창업촉진 등의 일거양득의 정책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동반성장 지식플랫폼의 설립과 운용의 목적은 다양한 협력이론 및 협력모델의 제안과 성공사례를 플랫폼 내 집적시키고 이들 방법론과 사례를 대·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질적 양적 확산을 촉진하는데 있다.

동반성장 지식수급플랫폼은 동반성장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축적하여 협력지식과 사례를 플랫폼에 올려 제시하되, 플랫폼은 업종별 분류체계에 의해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아이디어의 제안 배경과 목적
- 아이디어의 내용: 방법론 및 관련 비용
- 아이디어의 실제 성과 또는 기대효과
- 아이디어 수용 시 제공자의 정보와 관련 아이디어의 수취료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서비스내역과 항목별 비용구조

또한 협력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경험제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운용기관에서 관련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나 경험자의 평가와 코멘트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관련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이들 아이디어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의 제공자는 정보이용자(협력대·중소기업)에게 관련 상세한 아이디어를 상호접촉 후 의사소통하여 상호계약을 통해 해당 지식아이디어의 수취 비용과 자문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반성장의 협력아이디어가 활발히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반성장 지식플랫폼의 활용 및 성공사례는 TV 등 시각 방송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방송국의 방영시간대를 대량 구매하여 홍보비용은 줄이면서 해당 플랫폼의 활용도는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대·중소기업간 기술 및 경영혁신 공동연구개발 및 교육협력을 위한 시니어 퇴직인력의 활용

대기업이나 협력중소기업들이 자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업훈련수준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경영혁신상의 파트너십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활동에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관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의 사내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기술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이들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대기업에 파견 상주토록 하여 장기간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대기업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소기업 교육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전문기술인력 중 시니어 퇴직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의 멘토링제도를 지원하는 것도 요망된다. 단순한 직무 및 업무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력 향상, 기술력 증진 등 지원의 영역과 과제 등을 고도화시켜 향후 협력의 질적 발전을 유인하여 글로벌 선진강소기업 수준의 기술력으로 향상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대기업은 그만큼 신규채용과 생산에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상호 유익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5.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공동마케팅 및 판로개척

동반성장의 길은 결국 시장 내 해당 협력 제품이 팔림으로써 그 성과가 나타난다. 기술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마케팅 및 판로지원확대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최종적 마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계지원방

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글로벌 브랜드가치를 결합하여 협력 전략품목 위주의 해외마케팅을 통해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해외동반 전시회 및 투자설명회 지원
- 해외 플랜트 공동진출: 고도의 엔지니어링 및 플랜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관련 기자재 제조 또는 설비장치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로 공동수주활동을 지원
- 해외규격 및 특허 공동획득으로 기술 보호를 통한 판로확보의 선점

6. 기타

현행 지속가능경영대상에 동반성장 협력부문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하여 협력대·중소기업들을 공동 포상하는 동기부여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포상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방송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동반성장을 확산하고 사회에 전반적인 공정 및 신뢰할 만한 협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포럼 내 동반성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특화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동반성장의 관심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협력 시 발생하는 고충처리 상담제도 또는 신문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신고자의 보호와 제재나 보복금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처리할 협력위원회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관련 임원급 이상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활용하되 신고된 건은 정밀 조사하여 실질적인 조치(담당자의 감봉, 인사조치 또는 교육)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협력기업 모두에 공시되어 향후 이러한 문제나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호 경영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관리적 요소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 공정거래위원회(200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제도」.
- 공정거래위원회(2005),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공정거래위원회(2005b), 「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공정거래위원회(2005c),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2007),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 공정거래위원회(2010), 「공정거래 백서」.
- 관계부처 합동(201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 국토해양부(2009), 「건설산업 상생협력 현장」.
- 기획재정부 외(2009), 「2010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
- 김기찬(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념과 비전」.
- 김두진(2006),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법제연구, 제30호, pp. 147-176.
- 김승일 외.(20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 구축 및 상생문화 조성방안」.
- 김승일(2004), 「대·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기본 프레임워크」, 중소기업연구원.
- 김승일(2004b), 「중소기업지원강화방안-하도급(2차이하) 질서개선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 김승일(2007),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국회간담회(이승희 의원실 주관)발표자료
- 김승일(2007b), 「중소기업간 협력실태와 정책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 김완섭, 김달곤(2000), 「거래비용이론을 이용한 발주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원, 제13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김익성(2006), 「대기업 협력중소기업체의 원가혁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익성(2007), 「대형마트와 납품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김익성(2008), 「NO CSR No FUTURE」, 중소기업청.
- 김익성(2009), 「백화점 거래구조 현황분석 및 현황분석 및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 김익성·남기남(2008), 「대형할인마트와 협력중소기업간 만족도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및 정책제안」, e-비즈니스연구
- 김인호(2005),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전략」, 대한상공회의소.
- 김진성(2010), 「기업생태계를 가꾸는 지혜: 이타자리(SERI 경영노트)」
- 박정구(2005),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상생협력 연구회(2006), 「상생경영」, 김영사.

- 손재권, 오정석(2010), 「앱스토어 경제학」, 한스미디어.
- 송장준 외(2004), 「대·중소기업 협력모델 개발 연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 윤성민(2004), 「중소기업-대기업의 바람직한 협력방식」, 기은조사, 2004 가을호, 기업은행.
- 조동훈 (2009),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3호
- 조현진(2006),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신뢰, 협력규범 및 결속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제11권 제2호, pp.173-192.
- 중소기업중앙회(2007), 「대규모점포 거래중소기업 실태 설문조사」.
- 중소기업중앙회(2007b), 「대규모점포 거래중소기업 거래사례」.
- 중소기업중앙회(2009), 「중소기업현장애로보고서」.
- 중소기업청(2010),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지식경제부(20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08-2010년)」.
- 지식경제부(2010), 「SW 대·중소기업, 본격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 지식경제부(2010), 「2010 주요 기업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 한국은행(해당연도), 기업경영분석

[외국 문헌자료]

- Arrow, Kenneth J. (1974), "The Limits of Organization" Norton, New York
- Abländer Michael & Konstanze Senge(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m Einzelhandel" Metropolis Verlag
- Chesbrough, H. W. (2003) "The Era of Open Innova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4, no. 3 : 35-41
- Iansiti, M.(2004), "The Ecology of Strategy"
- MacDuffie, J. Paul /S. Helper(2005), "Collaboration in Supply Chains With and Without Trust", Oxford University Press,
- Nonaka,I.(1995), 지식창조기업이론
- Williamson, O.(1985), "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N.York.

참고자료: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에 해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본 시책의 방향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대·중소기업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추진, 상생협력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등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토록 함
 - 주요 시책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인력교류의 촉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 지수의 산정과 공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추진 등을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는 직전 사업 년도의 연간매출액(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상대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
 - 원사업자의 의무 :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3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3조의 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4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5조), 선급금의 지급(6조), 내국신용장의 개설(7조),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8조), 감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9조), 부당 반품의 금지(10조), 부당감액의 금지(11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12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13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17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13조의2), 부당한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 금지(18조~19조), 탈법행위의 금지(20조) 등을 규정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22조), 분쟁조정협의회(24조),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25조, 25조의3항, 32조), 과태료 부과(30조,31조) 등을 규정

※ 주의:

본 자료는 2011년 지속가능경영포럼(www.smforum.or.kr)을 위해 준비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자유롭게 인용 가능하나, 인용 시 필히 출처가 “지식경제부 지속가능경영포럼”임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팀 02-2624-0252